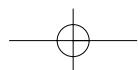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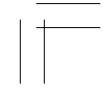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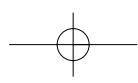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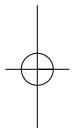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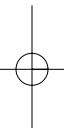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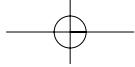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I. 문제 제기
- II. 국내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지원 체계
- III.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의식조사 분석
- IV.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  
– 안산시를 중심으로 –
- V.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점
- VI.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통합 적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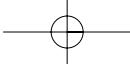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I. 문제제기

-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해외관광의 증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를 넘어서고 있음
- 과거 외국인은 외국유학생, 외국인상사주재원, 국내거주 외국인 외교관, 이민자 등 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혼혈인, 탈북자, 중국교포 등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착취, 사회범죄 발생, 결혼사기, 제2 세 문제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뿐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음
- 그러나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며 어느 사이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음
- 지금 까지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은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들 주변의 사회·종교단체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음
-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책은 물론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II. 국내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지원 체계

### ■ 법적 지위

#### ●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를 말하며, 여기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와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자가 모두 포함됨

#### ● 보호의 기준

- 체류국의 영토고권에 의한 법질서에 복종
  - 대인고권에 의해서 본국과 계속적 관계 유지(외국인의 이중적 지위)
- ※ 외국인은 국적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됨(헌법 제6조 ②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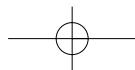
#### ● 체류국에서의 권리 ·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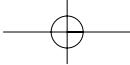
- 권리 : 일상적인 사생활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 인정
  -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대체로 인정되나 투표권 등의 정치적인 권리는 부분 인정
- 의무 : 체류국의 국내법에 복종해야 하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체류당국에 등록하는 경우와 공동체 보존(전염병, 화재 등에 대처)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음

#### ● 주민으로서의 권리 · 의무

외국과의 상호주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주민의 권리 · 의무는 없고 개별법에서 권리 · 의무 부여

-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의 권리 · 의무는 불인정(지방자치법 제13조의5 ①)
- 주민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주민등록법)를 가지고 있는 자 (지방자치법 12조)
- 주민소송 불인정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서 불인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주민등록법 제6조)

● 주민투표법상 투표권 부분 인정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주민투표법 제5조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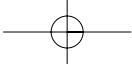
- 제주도에서 최초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인정(제주도 주민투표조례 제3조)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부분 인정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공직선거법 제15조 ②의 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은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3년 8월 16일 제정·공포되었음
- 여기에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총칙,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보직 등으로 구성되었음
-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인력부족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은 미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작성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들 중 적격자를 추천하여, 사용자가 선정 후 그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동법 제 6조 내지 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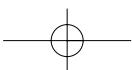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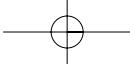
## KRLIA FOCUS 제12호

- 위 법률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22조), 출국만기보험(제13조), 건강보험(제14조), 귀국비용보험(제15조), 외국인 근로자 귀국시 사용자의 금품관계 청산의무(제16조),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용자의 보증보험(제23조), 차별금지(제22조) 등의 규정과 부당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제29조 내지 31조)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 노동권 보장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처우 개선에 큰 의미가 있음
- 본 법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의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양성화를 위한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 각종 무료의료 및 문화사업, 편의제공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와 협력할 의무를 공시하고 있음

### ■ 중앙부처별 외국인 지원업무

-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중 외국인 관리업무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법무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재경부 등으로 많은 부처가 부분적인 외국인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요 부처의 외국인 지원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주요업무는 국적과 관련된 활동,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등임
-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고용 관리, 외국인력 제도의 전반적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 및 지도·관리 업무를 수행함
- 여성가족부는 주로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업무와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함
- 외교통상부는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인 출입국 및 국내체류, 국적취득 및 상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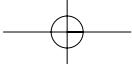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표 1〉 중앙부처별 외국인 지원업무

기 관	소 관 업 무	내 용
법무국 (출입국관리국)	출입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입국 허가, 난민인정</li> <li>· 외국인 및 재외동포 체류 지원 (외국인 등록, 사증 발급인정,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li> <li>· 외국인 산업연수 지원</li> <li>·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외국인근로자 인권대책위원회)</li> <li>· 출·입국 사법조사,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li> <li>·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li> </ul>
노동부 (외국인인력고용팀)	외국인 고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운용</li> <li>·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li> <li>· 외국인력 도입 및 송출국가 선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li> <li>· 고용허가제 운영, 불법고용 대책 지원</li> </ul>
산업자원부 (투자정책·진흥과)	외국인 투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촉진법」운용, 외국인투자유치대책 수립</li> <li>· 외국인 투자 신고수리·허가 및 사후관리</li> </ul>
문화관광부 (국제문화교류과, 관광산업과)	외국인 노동자 문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노동자문화정책·외국인 노동자 문화정책 추진 (국내거주 외국인의 한국어교육, 외국인문화센터 운영지원,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li> <li>· 외국인의 국내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 외자유치 지원</li> </ul>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공공의료팀)	외국인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지원</li> <li>·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li> </ul>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가족문화팀)	외국인 여성·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li> <li>·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지원</li> </ul>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재외동포교육과)	외국인재외 동포 교육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li> <li>· 외국인 유학생 관리, 외국인 자녀 교육 지원</li> <li>·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li> </ul>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재외동포 보호·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의 보호·육성,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운영</li> <li>· 외국인 입국사증 발급(재외공관)</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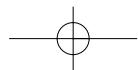
## KRLIA FOCUS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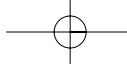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부동산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제도 정비</li> <li>· 외국인 토지취득관리제도 운영</li> </ul>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 당관, 법인납세과)	조세 부과 · 세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 부과 · 감면,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세원관리</li> <li>· 내국세 신고 · 부과 · 감면 · 사후관리</li> </ul>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 경협총괄과)	외국환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li> <li>· 기획</li> <li>· 외국인투자위원회 운영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 운영</li> </ul>

### III.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의식조사 분석

####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005년 12월 현재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력규모는 346(천명)으로 이중 합법체 류자가 165(천명, 47.7%), 불법체류자가 181(천명, 52.3%)으로 불법체류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7천명이 감소 한 규모임
- 2005년 한해(2005년 3월 ~ 2006년 2월) 입국한 외국인력은 116(천명)으로서 고용허가제에 의해 7만6천명(65%), 산업연수생제에 의해 4만명이 국내에 들어왔음
- 이는 2005년에 비해 전체 규모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산업연수제보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하는 비율이 약간 높음을 의미하며, 2006년 현재 국내체류 외국인력은 394(천명)으로 우리 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1.63%임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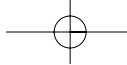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표 2〉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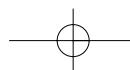
연도	총 계	취업비자	연 수 비 자			불법체류자
			소 계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06.12	394,000 (100.0)					
'05.12	346,000 (100.0)			165,000 (47.7)		181,000 (52.3)
'05.8	332,653 (100.0)	103,064 (31.0)	39,865 (12.0)	6,680 (2.0)	33,185 (9.9)	189,724 (57.0)
'05.7	344,653 (100.0)	116,534 (33.8)	37,603 (10.9)	6,803 (1.9)	30,800 (8.9)	189,994 (55.2)
'05.6	349,063 (100.0)	116,241 (33.3)	36,244 (10.4)	7,056 (2.0)	29,188 (8.4)	196,578 (56.3)
'05.5	358,167 (100.0)	125,116 (34.9)	33,868 (9.5)	7,352 (2.1)	26,516 (7.4)	199,183 (55.6)
'05.4	378,260 (100.0)	145,351 (38.4)	34,007 (9.0)	7,547 (2.0)	26,460 (7.0)	198,902 (52.6)
'05.3	400,983 (100.0)	166,900 (41.6)	34,887 (8.7)	7,806 (2.0)	27,801 (6.8)	199,196 (49.7)
'05.2	413,649 (100.0)	189,547 (45.8)	36,521 (8.8)	8,195 (2.0)	28,326 (6.8)	187,581 (45.3)
'05.1	415,970 (100.0)	192,334 (46.2)	36,590 (8.8)	8,485 (2.0)	28,105 (6.8)	187,046 (45.0)
'04.12	421,641 (100.0)	196,603 (46.6)	36,555 (8.7)	8,430 (2.0)	28,125 (6.7)	188,483 (44.7)
'03.12	388,816 (100.0)	200,039 (51.5)	50,721 (13.0)	11,826 (3.0)	38,895 (10.0)	138,056 (35.5)
'02.12	362,597 (100.0)	33,697 (9.2)	39,661 (11.0)	14,035 (3.9)	25,626 (7.1)	289,239 (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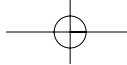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자료 : 성동구 외국인근로자센터 연구보고서, 2006.



## ■ 외국인의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규모에 있어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등 의 순이고, 인구 대비 비율로 비교하였을 때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 남도, 서울특별시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근로자의 3D업종 근로회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 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경제의 '공동화' 부문을 채우며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중소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이들이 없으면 가동이 실제 불가능함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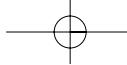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표 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근로자 거주 현황

(2005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근로자수	인구대비 비율
서울특별시	40,025명	0.39%
부산광역시	8,186명	0.23%
대구광역시	4,776명	0.19%
인천광역시	17,822명	0.69%
광주광역시	3,682명	0.26%
대전광역시	2,905명	0.20%
울산광역시	4,480명	0.41%
경기도	121,518명	1.14%
강원도	1,940명	0.13%
충청북도	5,592명	0.38%
충청남도	10,020명	0.51%
전라북도	3,585명	0.19%
전라남도	3,067명	0.16%
경상북도	10,456명	0.39%
경상남도	15,968명	0.51%
제주특별자치도	1,292명	0.23%
총 계	255,314명	

## ■ 의식조사 분석

- 본 의식조사는 경기 안산시, 서울 성동구, 경북 구미시,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분석이 가능한 유효 표본 74부를 분석한 것임



## KRLIA FOCUS 제12호

### ① 연령

- 응답자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31명 41.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0명 40.5%, 40대가 13명 17.6% 임]
-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20 ~ 30대 임을 알 수 있음

**〈표 4〉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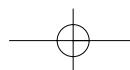
구 분	응 디자 수	비 율
20 대	31명	41.9%
30대	30명	40.5%
40대	13명	17.6%
합계	74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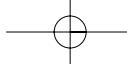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 ② 한국 거주기간

- 한국거주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1년 ~ 2년이 가장 많은 26명(35.1%)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5년 ~ 6년이 17명(23.0%)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 74명중 과반수 이상이 3년 ~ 4년 이상 장기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표 5〉 한국 거주기간**

구분	응 디자 수	비 율
1년 이하	10명	13.5%
1~2년	26명	35.1%
3~4년	12명	16.2%
5~6년	17명	23.0%
6~7년	8명	10.8%
7년 이상	1명	1.4%
합계	74명	100.0%





### ③ 한국에 온 이유

-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기술 습득 및 훈련을 위해라고 응답하고 있음
- 근로자의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근로자로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6〉 한국에 온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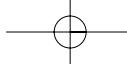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36명	48.5%
기술 습득 및 훈련을 위해	23명	31%
경험을 쌓기 위해	7명	9.3%
기타	4명	5.6%
무응답	4명	5.6%
합계	74명	100.0%

### ④ 월수입

- 월소득에 관한 질문에서는 70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인 54명이 9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90만원 이상의 월소득을 가진 응답자는 26명으로 약 35%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음

**〈표 7〉 월수입**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50만원 이하	1명	1.4%
50~70만원	16명	21.6%
70~90만원	27명	36.5%
90~110 만원	15명	20.3%
110만원 이상	11명	14.9%
무응답	4명	5.4%
합계	74명	100.0%



## KRLIA FOCUS 제12호

### ⑤ 1일 근로시간

- 외국인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응답자의 40.5%가 10 ~ 12시간, 35.1%가 8 ~ 10시간, 13.5%가 12 ~ 14시간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앞에서 살펴 본 임금수준과 비교해 볼 때 노동착취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권 보호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8〉 1일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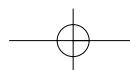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8시간이하	7명	9.5%
8~10 시간	26명	35.1%
10~12시간	30명	40.5%
12~14시간	10명	13.5%
14~16시간	1명	1.4%
합계	74명	100.0%

### ⑥ 비인간적 대우 유형

- ‘비인간적인 대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명을 대상으로 비인간적인 대우 유형을 다시 질문한 결과 폭언 및 구타(31.5%), 임금체불(26.4%), 인종차별(21.1%) 순으로 나타남

**〈표 9〉 비인간적인 대우 유형**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폭언 및 구타	6명	31.5%
임금체불	5명	26.4%
과도한 근로시간	2명	10.5%
인종차별	4명	21.1%
성희롱	2명	10.5%
합계	19명	100.0%





## IV.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체계 - 안산시를 중심으로 -

### ■ 기구 및 주요 업무

- 안산시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 복지지원과를 설치하여, 관리, 민원, 문화사업, 복지지원 등 4개 부서(담당)에서 1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표 10〉 안산시 외국인복지지원과 인원 현황

(단위 : 명)

계	일 반 직							기능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7급	8급	9급
14/12	13/11		1/1	4/4	4/3	3/1	1/2	1/1			1/1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6)

- 주요업무는 외국인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외국인관련 민원시책, 문화사업추진 및 복지 시책추진임

### ■ 국적별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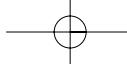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 안산시 경우, 인도네시안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베트남,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순임

〈표 11〉 안산시 근로자 출신 국가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중국	인도 네시아	파키 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기타
계	5,395	791	1,091	322	730	441	619	283	1,118
고용 허가제	999	-	139	-	219	205	162	148	126
산업 연수생	4,396	791	952	322	511	236	457	135	992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6)



## KRLA FOCUS 제12호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현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근로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음
- 외국인 근로자수 5,395명 중 산업연수생이 4,396명,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999명임

**〈표 12〉 안산시 외국인 고용업체별 근로자 현황**

계	고용 형태별 근로자수		
	계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업체 수	986개	332개	654개
외국인 근로자수	5,395명	999명	4,3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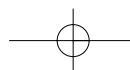
자료 : 안산시 내부자료(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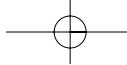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 ■ 주요 시책 및 프로그램

- 안산시의 외국인을 위한 주요시책은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 근로자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내외국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원시책으로 각 시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3〉 안산시의 외국인 주요 시책 및 프로그램**

구 분	시 책 및 프 르 그 램
외국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 한글교실운영,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귀화근로자 개명지원
외국인 긴급지원시스템	- 상담창구운영, 긴급서비스연계망 구축, 응급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생활체육 활성화	- 종목 : 축구, 농구, 크리켓, 세팍타크로(족구) 정기리그전 개최 - 지원 : 경기장 제공, 심판 및 음료수, 간식지원,
다문화사회	- 외국인 근로자 컴퓨터교육,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 외국어강좌,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 및 귀환교육, 아시아문화체험, 일일교실 통합프로그램
내외국인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원시책	- 외국인관련 민원창구운영, 내외국인 지역공동체 형성, 외국인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 외국인 의견수렴 모니터제도, 외국인 근로자 기초질서 계도 및 거리청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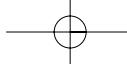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 ■ 시민 · 사회 · 종교단체의 지원사업

- 안산시에는 모두 10개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가 있으며 주로 교회, 성당,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음
- 여기서 돌보는 대상국가 근로자는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인, 중국 조선족, 몽골, 스리랑카이며, 특이하게도 소금밭교회에서는 주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들 외국인 지원단체는 외국인 노동자쉼터, 아기방,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등의 부설 기관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의료지원, 귀환프로그램 등임

**〈표 14〉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현황**

명칭	대상국가	기타 / 부설기관	주요사업
안산이주민센터 (구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 동남아시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노동자쉼터</li> <li>· 이주여성상담소</li> <li>·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li> <li>· 코시안의 집</li> <li>· 다문화연구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임금체불 등)</li> <li>· 쉼터 운영</li> <li>· 한글, 컴퓨터 교육</li> <li>· 의료지원</li> <li>· 외국인 체육행사 추진</li> <li>· 결혼이민자지원 사업</li> </ul>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 '갈릴래아'	-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릴래아 아기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임금체불 등)</li> <li>· 쉼터 제공</li> <li>· 갈릴래아 아기방 운영</li> <li>· 의료지원</li> <li>· 한글교육</li> <li>· 귀환프로그램(컴퓨터) 운영</li> </ul>
안산조선족교회	- 중국 조선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눔과 기쁨” 원곡동 나누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li> <li>· 쉼터 제공</li> <li>· 의료지원</li> <li>· 한글교육</li> <li>· 귀환프로그램(컴퓨터, 요리) 운영</li> </ul>
소금밭교회	- 주로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 운영</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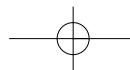
## KRLIA FOCUS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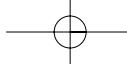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집	- 중국, 조선족(재중동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지부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li> <li>· 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노동, 의료)</li> <li>· 의료지원</li> <li>· 쉼터 운영</li> <li>· 한글교육</li> <li>· 귀환프로그램(컴퓨터) 운영</li> </ul>
안산선교교회	- 동남아시아 : 주로 필리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li> <li>· 의료지원</li> <li>· 쉼터 운영</li> <li>· 한글교육</li> </ul>
안산안디옥 국제선교회	-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li> <li>· 의료지원</li> <li>· 쉼터 운영</li> <li>· 한글교육</li> </ul>
보문선원	- 스리랑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설 마하보디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li> <li>· 쉼터 운영</li> <li>· 한글교육</li> </ul>
온누리 M 센터	- 동남아시아, 러시아, 몽골, 중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li> <li>· 카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li> <li>· 의료지원</li> <li>· 쉼터 운영</li> <li>· 카페운영</li> <li>· 한글 및 컴퓨터 교육</li> </ul>
동산교회 선교센터	- 중국(한족), 베스탄, 몽골,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 의료지원</li> </ul>

## V.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문제점

###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지원단체의 일부 지역 집중

- 주로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도를 통한 입국노동자임
- 합법적 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가 많음
- 외국인 지원단체의 수도권 치중





## ■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의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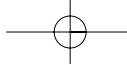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나 체계 면에서 매우 미흡함

## ■ 인권의 사각지대

- 최소한의 인간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함
-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불법체류를 이용하여 더욱 열악한 근로조건 제시)
-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퇴직금이 없음
- 불법체류자의 경우 노동 중 신체적 상해 발생시 회사로 부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함
- 불법체류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 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본 제도의 운영을 모르거나 있다고 해도 강제추방을 당할 우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함
- 권익 등을 침해받은 불법체류외국인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구제받기 어려움
-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고충상담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미흡함

## ■ 관리체제의 미흡

-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준비기간이 부족하여 국내체류 중 발생한 채권회수 등의 문제해결에 한계
- 외국인 실태파악에 대한 기초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등록 자료에 의해 거주현황 파악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 실태파악을 시행(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별개로 불법체류자까지 파악)
- 국적별, 유형별, 생활수준별 기초통계가 전무함



## KRLIA FOCUS 제12호

### ■ 외국인 근로자 등록관리의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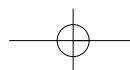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실태파악에 대한 기초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제조사가 아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등록자료에 의해 외국인 거주현황을 파악함
- 현재 지역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숫자파악이 불가능하며 외국인의 국적별, 유형별, 생활수준별 기초통계가 불완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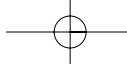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 ■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체제의 미흡

- 합법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되나, 고용보험은 유명무실함
- 불법체류자는 복지혜택이 전무한 실태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민간단체를 활용해 불법체류자를 지원함

### ■ 불법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사회보호망 취약

-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자녀가 취학연령이 되어도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안산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의하면 국내체류 18세 이하 이주아동을 약 2만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1,500명으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대를 이어 불법체류자가 되며 이로 인해 취학 및 인권, 사회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앞으로 더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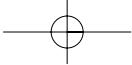
## V.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통합 적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

### ■ 외국인 법적 지위 및 지원체제의 강화

-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처우에관한기본법' 또는 '외국인지원기본법' 등
-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지원조례(안)이 시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달된 안을 중심으로 지역거주 외국인 현황과 특성 그리고 지역문화특성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여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주민'에 준하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
  - 주민으로서 공공시설이용권, 참정권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점차 부여함

### ■ 부처간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책의 종합 조정

- 최근 정부의 외국인 지원시책은 크게 중소기업 등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결혼이민자 가족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분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부서도 각각 분리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비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이 두 부서를 통합하여 외국인지원팀 또는 다문화생활공생팀으로 통합 조정 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이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작업장에서의 근무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향후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지역에서의 생활보장과 지역사회통합으로 그 내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대상별로 분리되어 계획하고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노동권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와의 가족동거 및 통합권, 교육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 KRLIA FOCUS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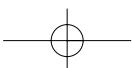
지역사회통합과 사회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문화권 보장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 성격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을 종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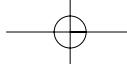
###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

- 외국인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지원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해야함
- 외국인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은 그 대상규정에 따라 크게 장기·영구체류 외국인 근로자, 일시적 체류 외국인 근로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대상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장기·영구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동화지향적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일시적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권, 가족권, 사회문화권 보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한편 초기 이주자는 한국사회 적응단계의 지원프로그램으로 한글 및 언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교통, 관공서, 고유풍속, 복지시설 이용방법, 환경, 관광지 소개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시키며 또한 귀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귀환프로그램, 즉 자전거 수리, 보일러 수리, 컴퓨터 수리 등의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정부와 민간단체간 파트너쉽의 강화 및 역할 분담

- 지방자치단체별로 종교단체,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쉼터 등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호 신뢰감을 구축함
- 중앙정부에서는 거주외국인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민간부문에서는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부문 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정기관의 접근을 거부하는 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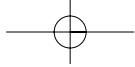
## ■ 공공부문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교류행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영구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역요원으로 양성함
  - 국제행사안내, 다문화교육 강사, 외국인 상담, 외국어 교사 등
- 평상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담요원과 같은 국가출신의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담을 도와주도록 함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

-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과 해외관광의 증대로 국내거주 외국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를 넘어서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수도 2006년 말 현재 약 394,000명에 달하고 있어 우리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잡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국가 및 국민은 단일민족이라는 뿐리 깊은 순혈주의 사고에 빠져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차별적 국민의식과 사회적 편견으로 외국인에 대해 무관심하여 왔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 등 우리 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며 우리 나라의 국민 및 이웃 주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더 이상 순혈주의, 단일 민족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해서는 국제화·글로벌화시대에 국가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다문화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도 이들을 우리의 이웃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와 인식 전환이 필요함

내용문의 : 조석주 수석연구원(02-3488-7316, csj@krila.re.kr)



## i, ॥E ॥, i ॥#»

이영호, 1984년 10월 12일생, 남성, 175cm, 68kg, 혈액형 A형,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 이영호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편입니다. 그의 직장은 대체로 조용하고 협업 분위기가 좋습니다.

### 1. ॥E, ॥ ॥#»

• 이영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123-4567890입니다. 그의 전화 번호는 02-3488-7370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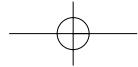
이영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123-4567890입니다. 그의 전화 번호는 02-3488-7370입니다. 이영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123-4567890입니다. 그의 전화 번호는 02-3488-7370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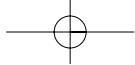
### 2.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영호	30,000원	이영호, KRILA FOCUS, 7630619	이영호 :
	50,000원	이영호, KRILA FOCUS, 367-01-0044-581	이영호 :
이영호	100,000원	이영호, KRILA FOCUS,	(이영호 : 1552-13)
	150,000원	이영호, KRILA FOCUS,	

3. ॥, ॥, ॥, ॥#” : 137-873-1552-13  
(137-873)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 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6년 7월 『f1』(1986)에 창립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는 1986년 7월 『f1』(1986)에 창립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는 1986년 7월 『f1』(1986)에 창립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1986년 7월 『f1』(1986)에 창립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는 1986년 7월 『f1』(1986)에 창립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는 1986년 7월 『f1』(1986)에 창립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2004년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1. &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2. &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f1』(2007) 3월 (『f1』(2007) 3월), 『f1』(2007) 6월 (『f1』(2007) 6월)

『f1』(2007) 9월 (『f1』(2007) 9월), 『f1』(2007) 12월 (『f1』(2007) 12월)

3. &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4. &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5. &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6. & 『한국지방행정학회』(한국지방행정학회)의 학회지로,

(137-873) 1552-13

T. 02-3488-7361 / F. 02-3488-7370 / E. local@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